

##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대관 허가 조건

1.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아니한다.
2. 사용 중 시설물의 설비·시설·비품을 파손·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 배상 하며,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·정돈한다.
3. 각종 물품(전시작품, 기구, 비품 등 일체)의 보관·관리·경비에 대한 선의의 책임을 지며, 이의 도난·분실·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.
4.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얻은 후 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한다.
5. 사용자는 실내시설 사용기간 중 음식물 반입을 하지 않으며, 사용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.
6. 사용자는 대관 시 정치·종교적 행위, 음주, 소란행위등 안전·기타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하고, 시설물 훼손 우려가 염려되는 자 등을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.
7. 긴급상황 발생 또는 경복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기타의 행사에 우선하므로,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허가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8. 허가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.
  - 가.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나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
  - 다. 기타 허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9. 행사안내문·시설·선전물 등을 테마공원 내에 게시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협의 후 부착하여야 하며, 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가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10.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련 조례,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11.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12. 사용자는 테마공원 내 전시관, 글로벌관, 연수관을 이용할 시 지상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건물 앞 인도에 주차하지 않는다.
13. 사용자의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의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.